



대구대학교와 대한변리사회의 상호교류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대한변리사회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는 상호교류와 협력 체제를 구축으로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산학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양 기관은 산학협력 분야에 걸쳐 유대강화와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협력하며, 산학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인재교육 및 육성을 위한 상호협조
- 나. 학술행사 및 전문가 초빙강연 등 관련분야 인력 교류협력
- 다. 연구·개발 과제의 공동참여 및 상호협력
- 라.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의 상호협력
- 마. 기타 공동협력에 필요한 제반사항

제3조(협약의 이행)

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효력발생 및 유지)

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)

양 기관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의 변경은 양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여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

각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.

2015. 11. 30.



총 장 홍 덕률



회 장 고 영희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